

## 재류자격과 기간

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(외국인)이 일본에 입국할 때,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정해져 그 자격과 기간은 여권에 표시됩니다.

재류자격 이외의 활동을 할 때나 재류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처벌 또는 강제추방 되는 일이 있습니다.

### ○재류자격

일본에 입국할 때, 입국목적과 재류목적에 따라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부여되는 자격입니다. 외국인은 이 자격의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.

### ○재류기간

각각의 재류자격별로 재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.

외국인은 그 재류기간에 한해서 일본에 체재할 수 있습니다.

재류기간을 초과하여 일본에 체재할 수는 없습니다.

문의처

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고베지국

(고베시 주오구 가이간도리 29 고베 지방 합동청사)

078-391-6377